

① 刑事被害者 國家救護 韓國憲法精神

- 現行: 있음

- 理由:

第 29 條 他人의 犯罪行爲로
인하여 生命·身體에 대한
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
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
부터 救護를 받을 수 있다.

- 근거: 있음

- 국민이 凶惡犯罪에 의하여 被害를 당하여 被害者 本인은 물론 그 가족의 生存權까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國家에서 救護를 해주도록 하였는 바,
- 이는 國家財政형편상 커다란 負擔이 될것이 명백하나 “國民의 犯罪로부터 解放”을 國家가 보다 완벽히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被害를 國家 構成員 全體가 함께 나누어 負擔함으로써 被害者 개개인의 피해를 最小化한다는 취지에서 刑事被害者 救護制度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- 또한 國家訴追機關인 檢事에 의해 被害者의 意思가 刑事裁判절차에서 충분히 開陳되나 현실적으로 事件의 폭주 등의 이유로 觀點에 따라서는 被害者의 억울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被害者가 원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裁判過程에서 자기의 意見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칫 소홀히 되기 쉬운 被害者 人權의 保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規정을 둠.